

중오범죄의 사례

Ralph민권법에 따라 다음은 불법입니다:

- ⇒ 개인이 보호된 집단 내의 실제의 또는 인지된 구성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힘이나 힘의 행사의 위협으로 방해하는 행위.
- ⇒ 종교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 폭력행사의 위협으로 종교활동을 막는 시도.
- ⇒ 개인이 보호된 집단 내의 실제의 또는 인지된 구성원이라는 것 때문에 한 개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 ⇒ 개인이 보호된 집단 내의 실제의 또는 인지된 구성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예배 장소 또는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
- ⇒ 개인이 보호된 집단 내의 실제의 또는 인지된 구성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개인을 폭행하는 행위.
- ⇒ 개인이 보호된 집단 내의 실제의 또는 인지된 구성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불법 폭력을 지지하는 행위, 그러한 지지는 막 닥쳐올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불러오는 효과와 그러한 행동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의도를 가진다.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공정고용주택국)의 임무는 고용, 주택, 및 공공 시설에서의 불법적 차별, 중오 폭력 및 인신매매의 범행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무료 전화 : (800) 884-1684

TTY: (800) 700-2320

온라인: www.dfeh.ca.gov

또한 다음에서 찾으세요



귀하의 장애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예비 고발의 양식을 제출하실 수 없으면 DFEH가 전화로 예비 고발의 양식을 대신 적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전달 서비스 (711)을 통해 또는 귀하의 VRS (영상 응답 시스템)을 통해 (800)884-1684 (음성)에 연락하시면 예비 고발의 양식을 기록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시간을 잡으시려면, 커뮤니케이션 센터 (Communication Center)에 800-884-1684 (음성) 또는 800-700-2320 (TTY)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contact.center@dfeh.ca.gov으로 이메일 해주십시오.

DFEH는 요청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의 하나로써 대체적인 형태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자료 또는 웹페이지에 접근하시기에 더 편한 형태를 의논하시기 위해 DFEH에 (800)884-1684 (음성 또는 전달 교환원 711)로 연락하시거나 contact.center@dfeh.ca.gov으로 이메일 해주십시오.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

DFEH-R01B-K - 12/2016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 (공정고용주택국)



중오 범죄 및 민권

Ralph민권법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질환, 성별 인식 그리고 성별 표현,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국가, 장애, 의학적 질환,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적 성향, 시민의 신분, 모국어, 이민 신분, 정치적 소속, 또는 노동 분쟁상의 입장 (캘리포니아 민법 51.7조)을 포함하는 개인의 실제의 또는 인지된 성별/성 구분으로 인한 폭력 행위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기재된 특징은 단지 예들이며 이 법하의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의 다른 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또한 형법상 범죄 행위일 수 있으며 위반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lph민권법은 고소 또는 소송을 할 권리 또는 DFEH의 검사에게 통지하거나 검찰 또는 사법당국에게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의 체결의 조건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또한 금지합니다.

DFEH가 하는 일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 (DFEH-공정고용주택국)는 중오 폭력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민법을 시행합니다.

- ⇒ 고소장을 조사합니다;
- ⇒ 법의 위반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 ⇒ 세미나 및 회의에 문서 자료를 제공하고 참여하여 중오 폭력, 인신매매, 괴롭힘, 그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관해 캘리포니아 주민을 교육합니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 캘리포니아법에 금지되니까?

캘리포니아법은 구두의 또는 문서상 협박, 신체 폭력 또는 폭력 미수, 낙서,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 또는 재산 피해를 금지합니다. 다른 캘리포니아법은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위; 종교 교육 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예배 장소 또는 건물의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폭력행사의 위협으로 종교활동을 막는 시도. 또는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또는 다른 보호된 근거 때문에 그 건물이 목표가 되었으면 예배 장소 또는 개인의 부동산내에서의 개인 안전에 대해 개인이 두렵게 하기 위해 폭탄을 사용하거나 불을 내는 행위.

이러한 법이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돕습니까?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국가,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성향, 정치적 소속 또는 노동 분쟁에서의 입장으로 인한 폭력행위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의 피해자인 개인들을 위한 민사상 법적 구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용가능한 법적 구제 방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 접근금지 명령
- ⇒ 실제 손해배상
- ⇒ 징벌적 손해배상
- ⇒ 민사 벌금
- ⇒ 변호사비

이러한 법으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내가 증오 폭력의 피해자라 믿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1 이 안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변호사, 경찰 또는 정부기관에 연락하실 때 이 안내서를 보여 주십시오.
- 2 경찰에 폭력적 위협 또는 행위를 보고하십시오. 폭력적 위협 또는 행위와 특징의 연관성을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성향, 등). 이 연관성은 귀하의 특징 또는 귀하가 관련된 집단 또는 개인을 근거할 수 있습니다.
- 3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DFEH, 법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 예를 들어 지역 경찰서, 지방 검사, 또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DFEH, 법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 예를 들어 지역 경찰서, 지방 검사, 또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사법 52조에 따라 Ralph 또는 Bane 민권법을 시행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소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DFEH 고발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안 날로부터 1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공정고용주택국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하시도록 준비하시고 고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무료전화(800) 884-1684에 전화하셔서 DFEH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적 구제 방법

접근금지 명령: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서 받으신 후, 그 명령의 위반자들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이러한 손해는 의료치료비, 손실된 임금, 건물구내 수리, 또는 감정적 고통 및 괴로움에 대한 금전 지불을 포함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은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추가의 손해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벌금: 법원은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25,000의 벌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 법원은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의 지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